

보도시점 2026. 8. 21.(금) 배포 즉시

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사업장 지도·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

1. 관련 기사

- 8.20.(목) 머니투데이, 일도 집도 다 잃을라...할 말을 잃다
8.21.(금) 머니투데이, 연 3000명 목숨 잃는데...일터 옮길 자유가 없다

2. 설명 내용

- 위 기사에서는 최근에 폭염 등으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 사례 3건을 제시하면서, “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데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로 고용허가제가 거론된다”라고 언급하였음
 - 그러나 기사에서 제시한 사례는 모두 고용허가제(E-9)가 아닌 다른 유형의 비자 소지자들로서, 전남 해남에서 숨진 태국 국적 노동자는 관광비자, 경기 평택에서 숨진 60대 이주노동자는 영주(F-5) 비자, 경기 여주에서 숨진 라오스 국적 30대 여성은 계절근로(E-8) 노동자이며,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는 관련이 없음
 - 기사에서는 ‘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사업장에 한해 가능하다’는 언급도 하였으나, 고용허가제는 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써, 사업장 지도·점검 시 사업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
 - 한편 위 두 번째 기사에서 ‘이주노동자들은 해마다 3,0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있다’는 인용 보도를 하였으나,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최근 1년에 100명 내외*로 파악되어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(2024년 114명, 2025년 99명)

* E-9 뿐만 아니라 국내 취업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재사망자 수입

-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써
 - 국내 특정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에게 국내 입국 및 취업활동을 허용하고(E-9 비자 부여) 있으며, 그 특정 기업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
 - 다만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경우 인력난을 겪는 국내 기업의 어려움, 국내 노동자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정체(또는 저하) 등의 우려가 있어,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, 인권 침해, 임금체불 등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동하는 경우 (노동부 고시로 규정)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
-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숙소 등을 포함하여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업장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지난 6.9.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고용허가제)을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법 숙소 제공을 금지하였고('27.6.10. 시행)
 - 아울러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외국인노동자 밀집 지역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금년부터 주거시설을 개보수하는 농가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 - 또한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도 전문가,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그 요건을 완화하되, 국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, 국내 노동자 보호 등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수급대응TF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순 (044-202-7223)